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년월일 : 2004. 9. 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본 건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8월 17일자로 영등포구의회로부터 우리 구에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재의요구 사유

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04. 8. 17.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04. 8. 18.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으며, 동법 규정에서 재의요구를 받으면 우리 구는 구의회에 재의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하는 것이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세정과-2215호, '04. 7. 28.)과 아래 등의 사유로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를 하는 것임.
-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침.
 - 재산세는 6.1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조례 포함)에 따라 당해 물건 현황과 과표·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6. 1.)에 성립됨
 - 따라서 재산세 납기경과와 납부의무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 재산세의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저해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전국적인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함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
 - 헌법(제38조)에서 조세의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록 지방세법(제 18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지방세법에 조례로서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또한, 과세기준일(6. 1.) 전에 인상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이유가 특단의 사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만일, 소급적 세율인하가 시행될 경우 이미 확정되어 납부함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 다른 모든 조세법률 관계도 불안정한 상태로 영향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리게 됨

-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조세 불평형성을 초래함
 - 소급입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공평주의에 합당하여야 하는데
 - 세율인하 소급적용으로 일부 납세자 부담이 경감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세율만 인하함으로써 상가 등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저해하며
 -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그 인상률이 일부 완화되는 반면, 과표 인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은 오히려 세액이 전년보다 인하되어 주택 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됨으로서, 특정 한 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
 - 또한,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그 정책목적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건 조례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및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위헌·위법의 조례안으로 판단

3. 재의요구 대상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주요골자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 2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25% 인하하여 과세기준일 2004. 6. 1. 해당부과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